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문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국마다 국제카르텔 제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쟁법은 정하여진 국제규범이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경쟁법을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역외 적용하여 집행하고 처벌하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국 경쟁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쟁상대가 되는 기업들 역시 우리 기업의 경쟁양태를 주목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어느 한 나라에서 카르텔 행위로 적발되면 그 파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제재를 피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민사소송 위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자칫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제카르텔 혐의를 받는 것 자체로도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고객의 신뢰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경제계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산업계,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해외 경쟁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준칙을 선포합니다.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1.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만나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만남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경쟁회사는 문자 그대로 경쟁자일 뿐, 협조자가 아니다.
2. 경쟁회사들과 가격 및 거래조건, 물량, 설비증설,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거나 합의해서는 안 된다.
3. 사업자단체 회의 시에는 가격동향이나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 등에 관한 대화를 절대 피하고, 불가피하게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접촉한 뒤에는 모임의 성격과 대화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4. 기업내부문서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국가마다 경쟁법의 규제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쟁법 위반이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경쟁법 준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임직원의 준법의식 고취에 힘써야 한다.
7.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준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2009. 11. 18

행동준칙 TF 위원장

김 상 열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 국제카르텔 예방 및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준칙이나 지침을 마련해 두는 일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 내용은 기업마다 다양하겠지만, 아래에 열거된 사항은 공통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1. 경쟁회사의 임직원과는 만나지 않는 게 상책(上策)이다.

- 경쟁회사는 문자 그대로 경쟁자일 뿐, 협조자가 결코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경쟁회사의 임직원은 만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및 사후에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카르텔의 존재 여부를 외형적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곤 한다. 경쟁사업자와의 회합에 참가한 사실 그 자체가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여겨질 수 있다.
- 경쟁회사의 임직원과는, 정당한 사업자단체의 회의를 제외하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사업자단체의 가입 여부도 반드시 법무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 사업자단체의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 주제를 검토하여 경쟁법 위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참석한다. 참석 시에는 가격 및 생산량, 거래조건 등에 대한 논의를 삼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자기 회사의 영업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금해야 한다.
 - 정당한 목적의 회의에 참석한 후에는 회의록을 명확하게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의의 주제를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법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는 경우에도 현재 또는 미래의 가격, 할인 등과 같은 가격정책, 판매방침, 거래조건, 생산설비 및 가동률, 생산량, 판매지역 등에 관한 사항은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때로는 가벼운 언급조차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 경쟁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는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가격 및 시장 상황, 기존제품이나 신제품의 매출액 등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지도 말고, 얻지도 않는다.

- 사업자단체 회의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합석한 사석에서도 가격동향이나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 등에 관련되는 내용의 대화가 시작되면 논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거나, 논의가 계속되면 현장에서 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 가격 등과 같은 거래조건, 생산량 및 판매량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단지 발언을 자제하거나 퇴장한다고 해서 책임을 전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임에 참석한 그 자체로도 그 모임에서 결정된 사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본의 아니게 카르텔로 의심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논의 현장을 떠날 때에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거나, 반드시 후에 증거로 현출(顯出)할 수 있을 만큼 표시가 나도록 행동하고 퇴장하는 것이 좋다.
 -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는 그 상황을 즉시 직속상급자 및 법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논의되거나 진행된 대화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 카르텔이란 가격담합 이외에 거래조건, 물량, 설비증설,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합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 관련되는 정보는 경쟁사에 제공하지도 말고 경쟁사로부터 입수하지도 말아야 한다.

2. 단순한 정보교환이나 경영상 접촉도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일단 카르텔로 의심을 받게 되면 사후에 카르텔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단순한 정보교환이나 기타 시장경쟁의 저해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접촉이라 하더라도 경쟁회사 간의 교류는 카르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특히 가격, 생산 및 공급 자료 등과 같이 시장 가격 및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교류는 경쟁법 위반 행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 최종판매가격의 담합과 같은 전형적인 카르텔 행위 이외에도 공동 할인행사의 개시 및 종료, 신용조건의 합의, 특정 제품의 생산 중단 합의, AS 조건 등에 대한 합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경쟁회사의 CEO나 영업담당자끼리 회합을 갖는 것만으로도 외국 경쟁당국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며, 카르텔의 제반 증거 가운데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 경쟁회사 간에 임원이나 실무자급의 정기 또는 부정기 모임이 있었고, 해당 임직원이 담당하는 상품 조건이 경쟁사 간에 유사하게 결정될 경우 모임의 존재 자체가 카르텔로 적발될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거나 불황기에 업계의 임직원들이 불황타개책을 함께 논의하는 일은 자칫 카르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 공동연구개발, 표준 설정, 전략적 제휴, 교차구매, 통계 정비 등과 같은 경쟁사업자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한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이것이 카르텔 의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임직원이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접촉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사(법무담당자)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경쟁회사와의 접촉 정보를 회사의 법무담당부서에서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공정 거래 전담 준법체제(Antitrust Compliance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과거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통계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무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고 시행해야 한다.
- 경쟁회사 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모임도 그 자체만으로 카르텔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회사로서는 경쟁회사와의 접촉이 불가피하더라도, 모임의 빈도와 성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3.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국제카르텔 행위라고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마다 경쟁법의 제도나 그 집행 및 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이런 맥락에서 어떤 기준에 비추더라도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쟁법 집행에 관해서는 통일된 국제규범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각국의 경쟁당국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시장의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독점 규제는 전적으로 국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국제카르텔 규제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 경쟁회사 간에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순한 정보 교환 및 이에 따른 후속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에도 담합으로 처벌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도 삼가하여야 한다.
- 각국이 경쟁법 집행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역외적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중국에는 국제카르

텔 규제의 기준이 가장 엄격한 국가의 규범 및 제도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기준에 맞추어 행동준칙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상책이다.

4. 문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기업 내부에서 작성되는 문서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기업 내부에서 작성하는 문서에는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경쟁법 위반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특히 경쟁회사에 관한 동향 정보를 담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당해 정보의 출처(예를 들면, 거래처로부터 들은 정보 등)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 또한 자사의 가격정책, 거래조건, 생산설비 및 가동률, 생산량, 판매지역, 기타 마케팅 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어떤 경로이든지 경쟁회사에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카르텔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불가피하게 경쟁회사의 임직원과 접촉한 뒤에는 모임의 성격과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법무담당자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 특히 사업자단체가 주관하는 모임이나 회의에서는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과 관련되는 논의 및 정보 교환은 삼가하여야 하며, 법에서 허용되는 모임을 통한 활동 내역도 역시 엄격하게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자기 회사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모임에 참여한 경쟁회사의 문서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 경쟁회사의 임직원이 자신과의 만남을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로는 경쟁회사의 임직원이 보고 목적으로 모임 내용을 과장한 것이 경쟁법 위반의 증거로 잘못 사용될 수가 있다.
- 경쟁회사를 언급하는 일체의 메모 또는 보고서 등에는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하였는가에 관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특히, 회사 임직원들이 해외출장 후에 작성하는 출장보고서에 경쟁회사 및 시장에 관한 동향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경쟁회사로부터 입수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삼가하도록 해야 한다.

- 일단 경쟁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고 국제카르텔 혐의가 있는 기업에게 소환장(Subpoena)이 발부 되면, 관련 증거 및 문서의 제출을 요청받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이 때 관련 이메일(e-mail), 회사의 내부보고서, 개인 다이어리, 비용 관련 자료, 전화 내역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자료는 물론, 글씨체나 기 확보된 자료에 대한 인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경쟁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거나 시작될 조짐이 있는 경우, 조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문서를 폐기 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자료의 폐기나 은폐를 조사에 대한 방해로 간주하여 엄중한 제재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 따라서 관련 문서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서는 임직원 개개인의 판단과 상식에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반드시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그 절차와 요령을 명확히 하고, 문서의 배포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회사가 사내·외 변호사에게 문서나 메일을 통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첫 머리에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Privileged & Confidential'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 미국, EU 등에서는 '변호사 비밀비닉의 특권'을 인정하므로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문건은 여타 문건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 '변호사 비밀비닉 특권' 제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유용하다.

■ 국제카르텔에 따른 법률적 위험이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도 기업 내부에서 자율준수풍토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준법(Compliance)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조직 전반에 걸쳐 경쟁법 준수를 위한 내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 기업의 임직원은 누구라도 카르텔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경쟁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제카르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 '임원(Principal Group)' 과 '실무자(Working Group)' 를 나누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1) '변호사 비밀비닉(秘密秘匿)의 특권'이란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교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증거제출이나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으로, 나라마다 인정하는 범위가 각각 다르다.

- 일반적으로 국제카르텔 합의는 최고경영진(Senior Executives)이나 임원들이 직·간접으로 개입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므로, 이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업의 최고경영자 스스로가 경쟁법 자율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회사 내부에 자율준수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매우 효과적이다.
 -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회사 내부에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준법의식이 희박해지기 마련이므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기업 내부에서 운용되는 경쟁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에게 국내·외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쟁법 위반에 따른 위험 요소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숙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단순히 '경쟁회사와 가격 등에 대해 논의하지 말라' 등과 같은 교육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Gray Area에 대한 설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국제카르텔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를 강조하는 등 카르텔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카르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참여기업 및 참여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
 - 불확실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해외 지사나 현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해당 국가에 경쟁법이 없다 하더라도,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경쟁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 해외 지사나 현지법인의 임직원은 물론, 해외에 출장하는 임직원들에게도 경쟁법 준수에 관한 서약을 하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 회사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시 경쟁법이 없는 국가라 할지라도 경쟁회사를 접촉하여 현지 영업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6. 국제카르텔의 의혹이 있으면 회사 내부에서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 일단 국제카르텔에 연루되면,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마련이므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일은 기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 경쟁당국으로부터 국제카르텔의 의심을 받거나 조사에 직면하면 우선 정확한 사실 파악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카르텔 혐의를 부인하고 경쟁당국에 반론을 제기하든, 혐의를 인정하고 리니언시의 자격을 획득하기를 희망하든, 그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파악과 판단의 신속성이다.
 - 정확한 사실 파악과 신속한 판단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일이야말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일 수 있다.
- 미국, EU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의 경우 과징금을 산정하거나 리니언시 자격을 부여할 때 경쟁당국의 조사에 해당 기업의 협력 정도를 감안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경쟁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의 초기 대응이 지체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이러한 실책으로 말미암아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 일단 국제카르텔의 혐의를 받고 조사에 직면할 경우 법무담당자의 역할, 변호사와의 연락, 관련 문건의 파기 금지 등 해야 할 일(Dos)과 해서는 안 될 일(Don'ts)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경쟁당국의 조사가 없더라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기존의 준법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체 점검은 일차적으로 각국 소재 사업장의 주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의혹이 있거나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직원 인터뷰 및 문서 점검을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 자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점검 시 과거의 법 위반을 자진하여 보고하는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사내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자체 점검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후술하는 자진신고를 검토한다.

7. 일단 국제카르텔의 혐의를 인정하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 국제카르텔 혐의로 경쟁법의 규제 대상으로 노출된 기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게 상책이다.
- 나라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다소 다르지만, 어느 나라나 'Speed Wins'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 국제카르텔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신속하게 자진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국제카르텔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경쟁회사에 앞서 자진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기업 내부에서는 위기 시에 이러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한편, 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게 바람직하다.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당국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 경쟁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Alternative Amnesty,²⁾ Amnesty Plus,³⁾ Penalty Plus,⁴⁾ Omnibus Questions,⁵⁾ Individual Leniency Program⁶⁾ 등 다양한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카르텔 적발에 따른 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 이 중 Alternative Amnesty와 Individual Leniency Program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카르텔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2) 경쟁당국의 조사가 이미 착수된 이후라 해도 자진신고를 한 최초의 기업에 대해 'Alternative Amnesty'가 주어진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법무부나 경쟁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의미 있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는가의 여부이다.

3) Amnesty Plus란 다른 카르텔도 신고하면 모든 카르텔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활용하여 카르텔을 조사받는 도중에 다른 카르텔을 최초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 다른 카르텔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외에, 현재 조사 중인 카르텔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면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4) Penalty Plus란 다른 카르텔에 대하여 Amnesty Plus 제도를 통해 자진 신고하게 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자진신고하지 않고 경쟁당국이 추후에 이를 밝혀내면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제도이다. 이때 자진신고하지 않은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Omnibus Questions란 신고인이 인지하는 여타의 어떠한 카르텔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주로 기업들이 규모가 큰 카르텔을 감면받기 위해서 소규모 카르텔을 자진 신고하는 기만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추가로 신고된 다른 카르텔의 규모에 따라 처음 신고한 카르텔에 대한 추가면책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6) 카르텔을 결성한 기업의 임직원이 소속 기업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 차원에서 감면제도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8. 공적 집행 외에 사적 집행에도 대비해야 한다.

■ 국제카르텔 행위로 단속되면 과징금이나 형사적 처벌로만 끝나지를 않는다. 사안의 당사자가 해당 기업과 경쟁당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 기업과 고객, 또는 해당 기업과 경쟁기업 간의 문제로도 확산되기 마련이다.

■ 특히 미국에서는 공적 집행 못지않게 사적 집행의 비중이 크고, EU 등 여타 지역에서도 최근 사적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미국의 경우 경쟁법 관련 소송 중 사적 집행(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비중이 95%에 이르며, 그 대부분이 카르텔과 관련되어 있다.
- 직접구매자 소송(Direct Purchaser Actions),⁷⁾ 간접구매자 소송(Indirect Purchaser Actions)⁸⁾, 후견인으로서의 국가소송(Parents Patrial Actions)⁹⁾, 외국인구매자 소송(Foreign Purchaser Actions)¹⁰⁾ 등 다양한 민사소송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 직접구매자 소송과 간접구매자 소송은 통상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진행된다.
- 직·간접구매자 가운데 집단소송 그룹에서 이탈한(Opt-out Of The Direct Purchaser Class) 사람들도 피고들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Individual Opt-out Cases).¹¹⁾
- 사적 집행과 관련되는 소송은 경쟁당국의 조치가 내려지고 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제기되는 경우(Follow-on Claims)가 다반사이다.
- 경쟁법과 관련되는 사안은 ‘공적 집행 따로, 사적 집행 따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7) 미국에서는 카르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접구매자들이 Clayton법 제4A조에 따라 실제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Federal Treble -damages Class Actions).

8) 카르텔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간접구매자들의 소송에도 직면하게 된다. 간접구매자란 카르텔을 공모한 기업의 제품 및 등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담합 참여자가 아닌 제3의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자들이다. 연방법에서는 간접구매자 소송을 금지하지만, 주(State)에 따라서는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법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서 36개의 주 정부가 주법에 입각하여 간접구매자 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도 이러한 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 간접구매자 소송 역시 대부분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다. 각 주마다 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각각의 소송 건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나 2006년 집단소송개선행법(Class Action Fairness Act)에 의해, 피고 측에서 간접구매자 소송의 관할권을 연방법원으로 보다 용이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되었다.

9) 카르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각 주의 검찰총장이 국가후견인으로서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주의 주민들이 카르텔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서 3배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10) 일반적으로 외국인 구매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적 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구매자들도 카르텔 공모 기업들의 행위가 미국시장에 직접적이고, 중대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구매자의 손해를 유발하였을 경우에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미국에서는 1966년부터 집단소송을 원하는 Class Member만 참가하는 Opt-in 시스템에서 Class Member의 참가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집단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Opt-out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Opt-out을 하지 않으면 집단소송의 원고로서 해당 집단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집단소송의 원고 집단에서 이탈한(Opt-out)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담합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동준칙 TF 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위원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학계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봉익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조계	안재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오금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경제단체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 조사본부장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 산업본부장
	박영배	한국무역협회	상무 : 국제통상본부장
	홍미경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이사 : 사무국장
실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